

제2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의 회 사 무 국
위 원 회 제 안

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6. 9. 2.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6. 9. 2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공직환경 변화와 다양한 세대의 공존으로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,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및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.

2. 주요내용

가. 후생복지사업의 범위 확대(안 제8조제11호, 제12호)

나. 용어(소속 공무원) 명확화(안 제8조제4호, 제7호, 제8호, 제10호, 제13호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사항 없음

나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다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4호, 제7호 및 제8호 중 “직원”을 각각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하고,
같은 조 제10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호를
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·체육활동 및 화합 행사

제8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3호(종전의 제12호) 중
“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12. 소속 공무원의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8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 ----- ----- ----- 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직원</u> 휴양 시설(콘도 및 휴양소) 이용료 지원	4. <u>소속 공무원</u> ----- -----
5.·6. (생 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7. 미취학 자녀를 둔 <u>직원</u> 에 대한 보육료 지원	7. ----- <u>소속 공무원</u> --- -----
8. 임신 축하 편의 용품 등 <u>직원</u> 임신·출산 장려 지원	8. ----- <u>소속 공무원</u> ----- <u>공무원</u> -----
9. (생 략)	9. (현행과 같음)
10. 우수·모범·적극행정 등의 인정발전에 기여한 <u>공무원을</u>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및 소그룹 탐방 지원(자부담 해외연수 포함)	10. ----- ----- <u>소속 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11. <u>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</u>	11. <u>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·체육활동 및 화합 행사</u>
<신 설>	12. <u>소속 공무원의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</u>

12.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
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사업

13. ----소속 공무원-----

